

외국의 재난 보도 기준 및 보도 사례



글. 유승관
동명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앙일보는 4월 22일자 1면을 통해 '세월호 선정적·부정확 보도 자제, 언론의 신뢰 원칙 지키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탑승인원 전원 구조라는 희대의 오보로부터 시작해서 사고 초기 오락가락했던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탑승자와 구조자 수, 구조작업 현황에 대한 오보,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 한 말을 구조된 학생으로 오인한 부정확한 보도, 에어포켓 등 과학적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질리오 섬 인근 해안에서 좌초된 코스타 콘코르디아(Costa Concordia)호
(출처 : DailyMail, 「Captain and first officer arrested as up to 70 cruise passengers missing and three dead as survivors tell of 'chaotic evacuation」, 2014년 1월 14일자)

**세월호 선정적·부정확 보도 자체
언론의 신뢰 원칙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확인된 사실만을 지면에 실고 실종자·사망자 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신중히 고려해 취재·보도하겠습니다. 언론의 최고 가치는 신뢰입니다. 선정적이거나 무리한 취재·보도로 취재원들에게 상처나 불신을 안겨선 안 된다는 보도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조속한 실종자 구조를 거듭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어지는 이론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등이 있었다. 또한, 부모의 생사가 확인 안 된 어린이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기본적인 취재윤리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의 보도를 비교한 논문에서 한국 언론은 극심한 피해 부각, 사실적이기보다는 자극적이고 주관적인 언어 사용, 분석 탐사 보도보다 속보에 의존, 전문가보다는 정부 발표에만 의존¹⁾하는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보도가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며 또 한번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와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원칙과 태도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따라서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재해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의 취재원칙과 윤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발생한 재난과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주의를 환기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재난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그동안 재난재해 사고를 보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책임자 처벌요구 보도에 중점을 두거나, 냉철한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보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치우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사후대책의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는 데에도 일부 언론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로이터통신, AP통신, 그리고 미국의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언론사의 재난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한국 언론이 추구해야 할 효율적이고도 바람직한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과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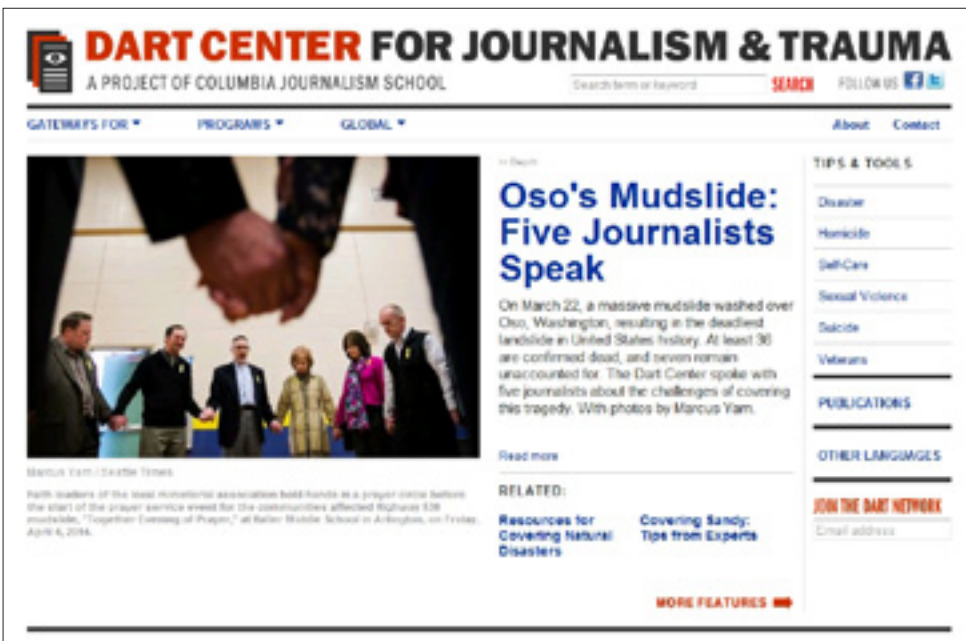
1) 백선기 · 이옥기 · 이경락(2012).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에 대한 국가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KBS, NHK, CNN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68.

2. 해외언론사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²⁾

1) 비극과 저널리스트-효율적인 취재를 위한 가이드(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로이터통신은 자체 재난보도 매뉴얼은 없으나 재난재해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DART의 가이드 등을 원용하여 사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항상 희생자들을 기자 스스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지길 원하는지와 같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 생존자들에게도 다가설 때와 물러설 때를 감각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 ②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정확해야 한다. 희생자와 희생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사실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③ 피로 얼룩진 이미지와 같이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이나 기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이러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홈페이지(<http://dartcenter.org/>) 메인 화면 캡처

2) 이하 부분은 유승관·강경수(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가을호, 140-169.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는 일반 독자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부작용을 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이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나 독자나 일반수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 ④ 일반 대중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어느 정도의 취재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부단히 기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 ⑤ 재난현장에서의 어떠한 심한 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면 안 된다.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 ⑥ 비탄에 잠겨있는 사람의 감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취재나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의 슬픔을 방해하거나 사적인 장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 ⑦ 기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파견이나 취재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책임자나 데스크는 특히 젊고 경험이 부족한 기자나 사진기자를 위험한 현장에 파견할 때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AP통신의 재난보도 사례

AP통신의 경우 매뉴얼화된 재난보도준칙은 없으나 일반적인 보도준칙을 원용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국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난 지역으로 파견한다. 단, 파견되는 기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보호장비(약, 비상식량 등)를 챙겨서 출장길에 오른다. 각 지역 데스크는 각 지국의 인원 이동에 대해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 ② 재난 발생 지역에 도착하면 본사나 허브 지국에서 파견된 팀장과 매니저를 중심으로 재난 지역 파악에 나선다. 이때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하고 본 것들은 기사화되면서 동시에 다음 취재를 위한 정보가 된다.
- ③ 재난 지역 출장이 예상되는 기자들은 미리 파상풍 등 예방조치를 한다(파상풍은 5년 유효).
- ④ 단독 행동을 하지 않으며 침수 지역이나 지역 경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출입을 삼가야 한다(분쟁지역에서는 지역 안전담당자의 허락이 있어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

- 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임시로 고용하여 그 지역에 대해 모르는 기자들을 돕도록 한다.
- ⑥ 취재기자가 보내는 모든 기사나 영상은 현장 데스크가 허브 지국이나 본사와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송출 장비는 가까운 지국에 있던 위성 송출장비나 인터넷 장비(재난 지역에서는 힘듦), 위성전화 등을 이용한다.
- ⑦ 보도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을 기사화하려면 최소 3곳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재난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을 때는 상대의 허락을 얻도록 하며 취재원이 죄수들(실제 카트리나 취재 시 죄수들을 임시로 모아 놓은 버스정류장에서 촬영이 있었다)이라 할지라도 16세 이하의 얼굴을 찍지 못한다. 이때는 손, 발 등을 접사하도록 한다.
- ⑨ 만일 이미 송고한 기사나 영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실시간 수정을 할 때는 기사 중 잘못된 부분과 편집자 주(editor's note)에 그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수정된 것은 반드시 정정(correction)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⑩ 이미 잘못 보내진 기사나 영상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사용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프는 FIX 로고나 Bug를 붙여서 원래의 정보가 수정되었음을 알리고 사진은 새로운 캡션을 사용한 사진으로 대체한다. 비디오는 자막(script)이나 영상목록(shot list)을 수정하여 방송사에 다시 보낸다.
- ⑪ 인터뷰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자료는 출처를 밝힌다. 찬반이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담으려고 노력한다.

3. 재난재해 보도준칙

해외 뉴스통신사의 취재보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살펴본 결과 로이터통신의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 우선, 정확성, 과도한 표현, 진정한 보도 방향, 취재기자의 겸손, 희생자의 입장, 사전예방이나 안전교육을 중시하는 취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P통신의 경우도 취재기자의 사전 준비, 신속한 보도 준비, 취재원의 초상권 보호, 취재 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도 구체화된 재난보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사전교육하고 숙지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전문성이 있는 재난보도전문 기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비영리 공익단체인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

nalists: ICFJ)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원용한 재난보도에 대한 보도준칙 제언이다.

취재단계

- ① 가능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어떤 것이 밝혀졌고, 어떤 것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현장목격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오보도 부정확한 정보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 ② 추측성 보도를 금해야 한다 : 모든 기사와 정보는 출처를 명기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여야 한다.
- ③ 복수의 소스를 사용해야 한다 : 경우에 따라 정부라는 단일 소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나 업계관계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 ④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지나친 단순화나 축약을 삼가야 한다.
- ⑤ 주의 깊은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 잘 작성된 질문은 관계자의 답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⑥ 지도를 제공하라 : 시청자나 일반인이 재난의 양과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각적인 정보는 효과적이다.
- ⑦ 모든 미디어를 활용하라 : 정보를 온라인에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 이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사후단계

- ① 관련 서류 및 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재난이나 사고의 초기 몇 시간 동안은 업데이트된 뉴스가 중요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에 대한 공문서나 기록을 찾아야 한다.
- ② 전문가와 협의하라 : 건물 붕괴의 경우 건설건축 전문가와 교육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은 유용하다.
- ③ 스토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추적해야 한다 : 피해 정도나 물적 손해 등 사고의 진전에 따른 변화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④ 재난방지 대책과 예방 등에 대해 정밀보도를 해야 한다 : 정부나 지자체는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왔는지, 유사한 과거의 재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 ⑤ 재난의 패턴을 조사하라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정밀히 조사한다. 이러한 과정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 홈페이지(<http://www.icfj.org/>) 메인 화면 캡처

을 통해 어떤 시설이나 부분은 더 많이 또는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과 제시가 가능하다.

- ⑥ 향후 예방과 미래의 준비사항에 대해 보도하라 : 유사한 재난발생 시 대피방법과 예방법, 비상전화번호 등에 대해 안내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언론사의 재난재해에 대한 보도준칙의 기본 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최소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재난보도준칙의 기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언론사는 재난보도 취재에 대한 매뉴얼을 평상시 준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재 및 보도를 해야 한다.
- ② 재난뉴스 취재기자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③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취재행위나 인터뷰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 ④ 사상자나 생존자들, 가족들에 관한 가십성 기사는 사고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 ⑤ 재난보도 현장의 사정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는 데스크의 기사 내용에 대한 가

감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 ⑥ 현장에서 취재된 기사를 데스크에서 작성할 때 현장기자의 증언이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 ⑦ 사고 원인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재난대책 공식기구의 책임자나 대변인을 통해야 한다.
- ⑧ 재난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는 재난사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⑨ 사고 상황이나 목격담을 듣기 위한 목적이라도 부상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 ⑩ 재난 현장 취재 시 현장 통제관의 요구나 지시를 어기는 취재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⑪ 자극적이고 비참한 사고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⑫ 대형 재난일 경우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취재된 기사를 선별할 수 있는 현장 데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 ⑬ 언론사 내에는 재난보도를 전담하는 전문팀이 상설화되어 있어야 한다.
- ⑭ 희생자나 부상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⑮ 뉴스통신사나 언론사 간의 과열 경쟁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합동 취재 풀(pool)제도가 필요하다.

재난재해 취재보도의 실무지침에 대해서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기본적인 재난보도의 실무지침을 사전에 교육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소한의 보호 장비, 예방조치, 안전수칙, 송출장비, 인터뷰 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지침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재난보도가 특정 기자의 몫만이 아닌,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우선시하여 현장에 가까운 취재기자가 최초보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전체 기자에 대한 재난보도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소 재난보도에 대한 뉴스통신사나 언론사 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신속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인명을 구조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취재의 신속성과 속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상시적인 취재보도 교육을 통해 재난재해보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강조된다. 특히 재난방송에 있어서 보도는 사실성, 접근성, 흥미성과 같은 기존의 저널리즘적 뉴스가치 판단과 보도기준과는 달리 전문성, 정확성, 그리고 계몽성과 예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재난재해 보도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지 않는 보도양식이나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자제하고, 취재경쟁으로 인해 구조에 방해받지 않는 취재체계의 확립과 보도의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을 유지하고, 참혹한 현장의 모습보다는 재난구조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도하여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재난재해와 관련된 보도는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정보전달자의 역할과 동시에 방재기능 등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향후 재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재삼 강조해야 할 덕목으로는 사고현장, 피해규모, 생존자, 구조 및 의료상황, 정부나 관계기관의 대책에 대한 철저한 사실 중심의 취재보도와 정밀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편적 에피소드 중심 보도 보다는 맥락을 효과적으로 해설하는 해석적 보도와 재난 원인에 대한 추적과 재난 이후에도 이에 대한 검증과 평가에 대한 심층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총체적인 사회감시와 비판이란 독보적이고 숭고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 발표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정부 발표 의존형 받아쓰기와 팩(pack) 저널리즘, 그리고 속보 경쟁으로 인한 오보의 피해는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이자 언론 수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병폐는 부메랑이 되어 언론 자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나 아픔을 위로하거나 최소화시키기보다는 언론 스스로 더욱 감정적이 되어 극적이고 주관적인 보도를 일삼고 축소 및 과장된 보도를 하고, 추측성 보도와 흥미만을 자극하는 선정적 보도 경향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선동적이고 몰염치한 작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침몰의 피해 가족들이 한국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외신과만 인터뷰하려고 했을까? 이제는 재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선내방송 같은 한국 언론³⁾이란 비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재난재해 관련 보도준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대부분

3) 노정태, 세월호 '선내방송' 같은 한국 언론, 경향신문 2014.5.15, 29면.

은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된다면 많은 병폐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그간의 관행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자 스스로 취재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언론사도 취재원칙과 윤리강령에 대해 강조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언론의 중차대한 덕목이 환경감시이고, 이러한 환경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체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의 변화가 사회개혁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